

# 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023-60호  
2023. 10. 13.(금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## 차 례

### 규 칙(1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(규칙 제967호) ..... 1

### 훈 령(1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(훈령 제492호) ..... 4

### 고 시(2)

- 지적기준점 성과고시(고시 제2023-102호) ..... 7
- 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(고시 제2023-103호) ..... 8

### 공 고(2)

-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(공고 제2023-1071호) ..... 10
-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1075호) ..... 11

### 입법예고(3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공고 제2023-1078호) ..... 12
-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공고 제2023-1079호) 23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공고 제2023-1080호) ..... 32

공									
람									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2)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월 13일

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67호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(제2조 관련)

※ 엑셀파일 별첨

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□ 개정이유

폭증하는 복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기관별 정원의 직급·직렬을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: 816명(변동 없음)

나. 일반직 증·감 내역

○ 9급 : 89명(변동없음)

- 본청 : 54명 → 55명(증 1명)

▶ 사회복지 : 3명 → 4명(증 1명)

- 직속기관 : 5명 → 4명(감 1명)

▶ 의료기술 : 1명 → 0명(감 1명)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23년 10월 13일

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

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92호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구 본청 보조·보좌기관 직급별·직렬별 정원(제2조제1항 관련)

※ 엑셀파일 별첨

[별표 3] 직속기관(보건소)의 직급별·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제3항 관련)

※ 엑셀파일 별첨

## 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### □ 개정이유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정원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서의 정원내용을 조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○ 본청, 직속기관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1 및 별표 3).

- ▶ 본청 : 527명→ 528명(증 1명)
  - 생활지원과 : 28명 → 29명
    - 사회복지9급(증 1)
- ▶ 직속기관(보건소) : 55명→ 54명(감 1명)
  - 보건행정과 : 33명 → 32명
    - 의료기술9급(감 1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-102호

## 지적기준점 성과고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4항 및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기준점 종류	기준점 번호	전		후		비 고
		평면직각중형선좌표		평면직각중형선좌표		
		X 좌 표	Y 좌 표	X좌표	Y좌표	
도근점	5822	422411.92	2237983.62	422410.98	237983.08	세계좌표(재설치)
기 준 원 점 명		중부원점				
소 재 지		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16-2번지				
측 량 년 월 일		2023년 10월 5일				
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		대덕구청 토지정책과				
비 고		-				

끝.

## 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
중리동 407-9	한밭대로1111번길 6	2023. 10. 13.	건물신축	한밭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1,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#### ○ 도로명주소 폐지

No.	폐지 도로명주소	관련 지번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 사유
1	대전로1020번길 15-11	오정동 474-10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2	대전로1032번길 23	오정동 468-16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3	신탄진로810번길 41	신탄진동 122-20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4	송촌로 54	송촌동 168-1, 168, 236-16, 산25-19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5	회덕로33번길 83	신대동 346-1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6	옛신탄진로 145-1	오정동 436-7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
No.	폐지 도로명주소	관련 지번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 사유
7	신탄진로750번길 12	신탄진동 287-15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8	평촌5길 8	평촌동 287-18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9	신탄진로36번길 201	연축동 31-1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10	대청로63번길 34-21	신탄진동 56-8, -1	2023. 9. 18.	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(☎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) ([juso.go.kr](http://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◆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

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전자우편 주소 : daedeok@korea.kr
2. 접수기간 : 2023. 11. 12.(일) ~ 2024. 2. 10.(토) 끝.

※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.

##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자의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기간: 2023. 10. 13. ~ 2023. 10. 27.(15일간)
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, 제37조제7항
3.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내용
  - 가. 처분의 제목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직권말소
  - 나. 대상업소: 풍년식당 (김0회) / 대전 대덕구 대화로 49 (대화동)
  - 다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
    - 업소명(사업자등록 폐업일 2018. 8. 3.)
4. 고지사항
  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.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 - 6902. 끝.

##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자치법규명: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
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·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3. 주요내용
  - 가. 경제환경국, 도시건설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함(안 제5조의2 및 제6조).
  - 나. 실·국 분장사무를 정비함(안 별표 1).
4. 의견제출
  - 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의견제출 사항
   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(전화 : 042-608-6042, FAX : 042-608-3811, E-mail : dmsdud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변은영(전화 : 042-608-604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**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“환경과”를 “환경과, 자원순환과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건설과, 도시활력과”를 “건설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제1호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축제팀장”을 “관광축제팀장”으로 한다.

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자원순환과장”으로 한다.

제45조 중 “청소팀장”을 “청소행정팀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신설·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

[별표 1]

구 본청 실장·국장의 분장사무(제7조 관련)

※엑셀파일 별첨

[별표 4]

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(제9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호우·대설·태풍·지진·화산 시 편성기준

가. 비상단계

본 부 장	구청장		
차 장	부구청장		
총괄조정관	행정안전국장		
통 제 관	행정안전국장		
담 당 관	안전총괄과장		
실 무 반	인 원	총 6+a명	
	반 장	담당관(1명)	
	1)상황관리 총괄반 (5명)	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상황 관리팀(5명)	· 재난상황관리반 5명 -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-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-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
	2) 협업기능 반(a)	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	· 복지정책과
		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	· 환경과, 자원순환과
		다) 긴급 통신지원반	· 자치행정과
		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	·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건설과
		마)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	· 경제과
		바) 재난수습 홍보반	· 기획홍보실
		사)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	· 안전총괄과
		아) 교통대책반	· 교통과
		자) 의료·방역 서비스 지원반	· 보건소
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	· 자치행정과	
카) 사회질서 유지반	· 대덕경찰서		
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	· 동부소방서		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관리총괄반: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2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나. 비상1단계

<b>본부장</b>	구청장		
<b>차장</b>	부구청장		
<b>총괄조정관</b>	행정안전국장		
<b>통제관</b>	행정안전국장		
<b>담당관</b>	안전총괄과장		
<b>실무반</b>	인원	총 11+α+β명	
	반장	담당관(1명)	
	1)상황관리 총괄반 (10명)	가)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 상황관리팀(3명)	·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-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-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- 재난 주관부서 직원 1명
		나) 상황보고서 작성팀(3명)	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·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
		다)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(3명)	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·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
		라) 행정지원팀(1명)	· 총무과 직원 1명
	2) 협업기능 반(α)	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	· 복지정책과
		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	· 환경과, 자원순환과
		다) 긴급 통신지원반	· 자치행정과
		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	·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건설과
		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	· 경제과
		바) 재난수습 홍보반	· 기획홍보실
		사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	· 안전총괄과
		아) 교통대책반	· 교통과
		자) 의료·방역 서비스 지원반	· 보건소
		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· 자치행정과
	카) 사회질서 유지반	· 대덕경찰서	
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	· 동부소방서		
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(β)	·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동부교육지원청, KT, 한국수자원공사, 대한적십자사, 육군1123부대, 육군 1970부대 및 그 밖의 대덕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		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4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다. 비상2단계

<b>본부장</b>	구청장		
<b>차장</b>	부구청장		
<b>총괄조정관</b>	행정안전국장		
<b>통제관</b>	행정안전국장		
<b>담당관</b>	안전총괄과장		
<b>실무반</b>	인원	총 18+α+β명	
	반장	담당관(1명)	
	1)상황관리 총괄반 (17+α명)	가)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전파, 재난 상황관리팀(6명)	· 재난상황관리반 6명 -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-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-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
		나) 상황보고서 작성팀(3명)	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·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
		다)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(7명)	·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· 재난 주관부서 직원 5명
		라) 행정지원팀(1명)	· 총무과 직원 1명
	2) 협업기능 반(α)	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	· 복지정책과
		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	· 환경과, 자원순환과
		다) 긴급 통신지원반	· 자치행정과
		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	·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건설과
		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	· 경제과
		바) 재난수습 홍보반	· 기획홍보실
		사) 재난관리자원 지원반	· 안전총괄과
		아) 교통대책반	· 교통과
		자) 의료·방역 서비스 지원반	· 보건소
		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· 자치행정과
	카) 사회질서 유지반	· 대덕경찰서	
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	· 동부소방서		
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(β)	·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동부교육지원청, KT, 한국수자원공사, 대한적십자사, 육군1123부대, 육군 1970부대 및 그 밖의 대덕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		

비고(근무방법)

1. 상황보고서 작성팀: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: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행정지원팀: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
4. 협업기능반: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(대책본부 근무자)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[별표 5]

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(제9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편성기준

본 부 장	구청장		
차 장	부구청장		
총괄조정관	행정안전국장		
통 제 관	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		
담 당 관	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		
실 무 반	인 원	총 10+α+β+γ명	
	반 장	담당관(1명)	
	1)재난상황 총괄반 (9명)	가) 상황관리 총괄팀(3명)	·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·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
		나) 수습상황 파악팀(6명)	·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· 재난 주관부서 직원 4명
	2) 협업기능 반(α)	가) 긴급생활 안정지원반	· 복지정책과
		나) 재난현장 환경정비반	· 환경과, 자원순환과
		다) 긴급 통신지원반	· 자치행정과
		라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	·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건설과
		마)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	· 경제과
		바) 재난수습 홍보반	· 기획홍보실
사) 재난관리지원 지원반		· 안전총괄과	
아) 교통대책반		· 교통과	
자) 의료·방역 서비스 지원반		· 보건소	
차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	· 자치행정과	
카) 사회질서 유지반	· 대덕경찰서		
타) 수색, 구조·구급반	· 동부소방서		
재난대응 협업반(β)	·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동부교육지원청, KT, 한국수자원공사, 대한적십자사, 육군 1123부대, 육군 1970부대 및 그 밖의 대덕구 관할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		
현장지원반(γ)		· 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·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	

비고(근무방법)

1.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.
2. 재난상황총괄반·재난대응협업반·현장지원반 구성: 재난유형별 재난규모, 수습상황,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3. 근무방법: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2.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경제환경국) 경제환경국에 경제과, 에너지산업과, <u>환경과</u> , 교통과, 위생과를 둔다.	제5조의2(경제환경국) ----- ----- <u>환경과</u> , <u>자원순환과</u> -----.
제6조(도시건설국)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, 건축과, 공동주택과, 공공청사과, <u>건설과</u> , 도시활력과를 둔다.	제6조(도시건설국) ----- ----- <u>건설과</u> -----.

##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 명 :
- 생 년 월 일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- 의 견 :

내 용	의 견	비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079호

##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자치법규명: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
조례에서 행정기구 및 사무의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 - 가.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 소속 과를 신설·폐지함에 따라 과장의 직급을 정함(안 제7조의2 및 제8조).
  - 나. 실·과의 분장사무를 정비함(안 별표 1).
4. 의견제출
  - 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의견제출 사항
   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   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  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

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(전화 : 042-608-6042, FAX : 042-608-3811,  
E-mail : dmsdud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변은영(전화 : 042-608-6042)  
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**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**  
**일부개정규칙안**

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교통과장”을 “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 
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교통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건축과장·공동주택과장·공공청사과장·건설과장·도시활력과  
장”을 “건축과장·공동주택과장·공공청사과장·건설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3조(조직신설·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**[별표 1]** 구 본청 실·과·단장의 분장사무(제9조 관련)

※ 엑셀파일 별첨

[별표] 사무 전결 기준(제4조 관련)

※ 엑셀파일 별첨

[별표]

대형폐기물 스티커(제4조제1항 관련)

NO : (누계연번)

폐기물부착용 판매업소 :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 금액 :	배출자보관용 판매업소 :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 금액 :
○ 배출자 : ○ 배출일 :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 ○ 배출장소 :	○ 배출자 : ○ 배출일 :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 ○ 배출장소 :
배출품목	배출품목
※ 배출품목에 ○표 하십시오	※ 배출품목에 ○표 하십시오
※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<b>구청 자원순환과</b> <b>(608-6831~7)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</b> <b>신고</b> 하여 주십시오.  오정동(608-5601), 대화동(608-5602), 회덕동(608-5603) 비래동(608-5604), 송촌동(608-5605), 중리동(608-5606) 법 1동(608-5607), 법 2동(608-5608), 신탄진동(608-5609) 석봉동(608-5610), 덕암동(608-5611), 목상동(608-5612)	※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<b>구청 자원순환과</b> <b>(608-6831~7)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</b> <b>신고</b> 하여 주십시오.  오정동(608-5601), 대화동(608-5602), 회덕동(608-5603) 비래동(608-5604), 송촌동(608-5605), 중리동(608-5606) 법 1동(608-5607), 법 2동(608-5608), 신탄진동(608-5609) 석봉동(608-5610), 덕암동(608-5611), 목상동(608-5612)
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[인] (인영인쇄)	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[인] (인영인쇄)





##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자치법규명: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
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과 정비 사항 반영 및 일반직 직급·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 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).
    - 1) 정원 816명(변동없음)
    - 2) 일반직 직급·직렬별 정원 조정
      - ▶ 5급: 47명(변동없음)
        - 행정·시설 8명 → 7명(△1)
        - 행정·보건·환경·시설 1명 → 2명(+1)
      - ▶ 9급: 89명(변동없음)
        - 행정 29명 → 31명(+2)
        - 사무운영 6명 → 4명(△2)
    - 3)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

- ▶ 본청 528명 → 527명(△1)
  - 시설8급 21명 → 20명(△1)
- ▶ 사업소 36명 → 37명(1명 증가)
  - 시설8급 0명 → 1명(+1)

#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(전화 : 042-608-6042, FAX : 042-608-3811, E-mail : dmsdud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#### 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변은영(전화 : 042-608-604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※ 엑셀파일 별첨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 명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의 견 :

내 용	의 견	비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